

기업지원센터 운영규칙

제	정	2012. 01. 25
개	정	2012. 12. 05
개	정	2013. 01. 25
개	정	2015. 01. 19
개	정	2015. 05. 18
개	정	2021. 02. 25
개	정	2022. 09. 2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소재) 본 센터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산업기술혁신원 산하에 설치하는 기업지원 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라 하며, 아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센터를 교외에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12.05., 2015.01.19., 2022.09.20.>

제2조(목적) 이 규칙은 산학협력 친화형 인적자원개발사업 및 맞춤형 기업지원협력사업 등의 수행을 통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지원사업 활성화와 성과창출을 위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01.19.>

제3조(사업 및 활동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 <개정 2021.02.25.>

1. 산학협력 인적자원개발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정부부처 산학연협력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지원 특화사업 발굴·수주 및 시행
3. 산학연계 맞춤형 기업지원협력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
4.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산학협력 사업 및 활동 수행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특별사업 조직으로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<개정 2015.01.19.>

1. 센터장 1명
2. 운영위원회
3.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 약간 명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.01.19., 2022.09.20.>

② 센터장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직제운영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2.09.20.>

③ <삭제 2022.09.20.>

제 3 장 운영 위원회

- 제6조(구성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09.20.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05.18.>
- ③ 위원은 외부전문가, 본 대학교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01.25., 2015.05.18., 2021.02.25.>
-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공유협업센터장, 창업보육센터장, 현장실습지원센터장, 창업교육센터장 및 중소기업법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센터장 유고시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01.25., 2015.05.18., 2021.02.25., 2022.09.20.>
-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2.25.>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결정
2. 사업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
3. 센터운영비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4. 센터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출연금, 참여기업부담금, 교내지원금, 기타보조금 등으로 한다.

② 본 재정은 센터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0조(사업비 운영) 사업비는 각 사업의 세부운영지침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 관리한다.

제11조(예산 및 결산) ①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와 예산 및 회계규정을 준수한다.

② 센터의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센터의 예산집행 및 결산보고는 센터장이 수행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2조(운영보고) 센터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인센티브) 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에 대한 업적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준용규정) 이 규칙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산학협력단 규정류를 우선하여 따른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칙사항에 의한 센터의 운영은 2011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1610호 2021.02.25.>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1183: 2022.09.20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